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2019.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인구정책 설정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라. 인구정책 사업(안 제6조)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및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 추진
-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지원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3. 18.~2019.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3579, 2019.3.18.)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3579, 2019.3.18.)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8974, 2019.3.14.)
- 5) 조례·규칙 심의회 : 원안의결(기획감사실-6606, 2019.5.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관련 지원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찾아내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전입세대 지원

5.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기업체·군부대 지원

6.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등에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
- 제7조(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인구교육추진과 홍보물품 지원

2. 미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3. 미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삼사실장 유동근
연락처	(033) 330-2206